

#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333
----------	------

제출연월일 : 2021. 10. .
제출자 : 하남시장

1. 위탁사무명 :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2
-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추진 필요성

-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위수탁 협약 기간이 2022. 01. 31.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재위탁)을 검토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의 능률성 향상 및 전문성 확보

3. 위탁사무 내용

○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 사례관리
- 서비스제공(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및 무료급식 등 기타사업)
- 지역조직화사업

#### 4. 위탁시설 개요

구 분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소재지	하남시 덕풍천서로9(신장동)
규 모	6,267㎡(지하1층 ~ 지상4층)
정원	22명

#### 5. 민간위탁기간 :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5년(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21조의2)

#### 6. 수탁자 선정방식

-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공개모집)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후 선정

####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예산(안)	산출근거
하남시종합사회 복지관 운영	981,360	- 인건비 : 850,580천원 - 운영비 : 128,580천원 - 시설비 : 2,200천원

####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
- 사회복지관 사업의 능률성 극대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 위탁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 도모

## 9.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접수 : 2021. 11월 중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1. 12월 중
- 위·수탁 운영협약 체결 : 2022. 1월 중
- 인계·인수 : 2022. 1월 중

## 10. 관련 법령 및 조례 : 붙임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82호, 2020. 12. 2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 총직, 사회복지사 자격 등) 044-202-3022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법인, 임원, 시설) 044-202-3258

-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 [제목개정 2011. 8. 4.]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31.] [보건복지부령 제773호, 2020. 12. 3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 총칙, 사회복지사 자격 등) 044-202-3022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법인, 임원, 시설) 044-202-3258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3. 7., 2008. 11. 5., 2020. 1. 3.>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3.>

[본조신설 2004. 9. 6.]

[제2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 8. 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3조에서 이동 <2012. 8. 3.>]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3조에서 이동 <2012. 8. 3.>]

---

##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04.10.08 조례 제 747호  
(일부개정) 2006.01.06 조례 제794호  
(전부개정) 2015.10.05 조례 제1309호 (제명 포함)  
(일부개정) 2017.10.13 조례 제1486호  
(일부개정) 2018.12.27 조례 제1612호  
(일부개정) 2020.07.31 조례 제1812호

- 제4조(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 사회복지관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시설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1조 및 제21조의2를 따른다.<개정 2017.10.13>
- ③ 그 밖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위탁기간)**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되,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사업실적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

##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제정 ) 2001.04.16 조례 제609호  
( 전부개정 ) 2019.10.01 조례 제1716호  
( 일부개정 ) 2021.01.12 조례 제1879호  
( 일부개정 ) 2021.03.12 조례 제1900호 타 조례개정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자치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의회 동의 등)** ① 시장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하남시 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에 있어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3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인 일회성 사무로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무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무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10.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2.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능력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5.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능력
  6.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 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8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12.>
-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심사위원회의 실적 평가 등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등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1.1.12.>

**제7조의2(선정방법 등)** ①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집대상을 제한 할 수 있다. <신설 2021.1.12.>

1. 민간위탁사무의 전문성,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경쟁도입이 어려운 경우 <신설 2021.1.12.>
  2. 민간위탁사무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고도의 공신력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21.1.12.>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수탁기관의 모집대상을 제한하려는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경우 <신설 2021.1.12.>
- ②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공고시 선정기준, 심사항목 및 배점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